

『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2월 4일

나. 발 의 자 : 김근아, 강승수, 권기만, 김복자, 김태근
박세진, 손홍섭, 안주찬, 양진오, 정하영,
허 복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2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2월 12일

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근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최근 핵가족화, 고령화, 배우자 사별, 이혼가구의 급증으로 홀로사는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, 노인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
-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형성과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2조, 제3조)
-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5, 제6조)
-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, 제9조의5, 제34조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조,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- 최근 핵가족화, 고령화 등의 사유로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 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주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규정(안 제2조, 제3조),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,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,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(안 제7조) 등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.

○ 검토결과

• 본 조례안은

시 관내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심리상담, 심리치료, 말벗 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사는 노인들의 경제적, 신체적,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심적 부담을 완화,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